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87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6일 상정·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복지정책실장 이수연)

1. 제안이유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

○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2) 위탁유형 : 시설형

3) 위탁기간 : 1년(2024. 1. 1. ~ 2024. 12. 31.)

4)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센터의 운영은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기능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위탁사무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6)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 동북센터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5층(미아동, 남송빌딩)

· 동북쉼터1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77길 14-3, 5층(상계동, 문화빌딩)

· 동북쉼터2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 5층(휘경동, 우산빌딩)

※ 쉼터중 1개소는 계약기간중 운영종료 예정

○ 시설규모 : 동북센터(311.22㎡), 동북쉼터1(249.69㎡), 동북쉼터2(229.46㎡)

○ 담당지역 : 동북권 6개구(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 인력현황 : 9명

- 센터장 1명, 팀장 2명, 회계 1명, 팀원 5명

○ 위치도

<table>
<tr><td colspan="2">서울시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td></tr>
<tr><td colspan="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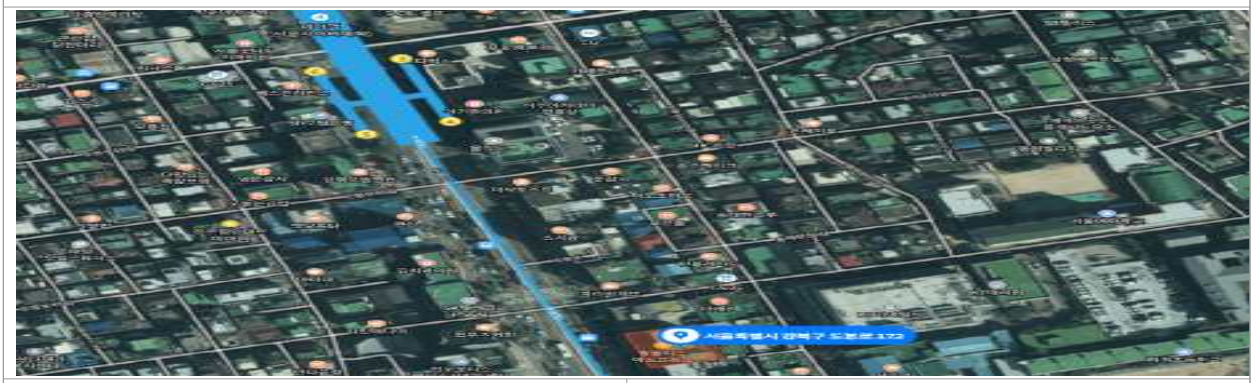 </td></tr>
<tr><td>노원쉼터</td><td>회기쉼터</td></tr>
<tr><t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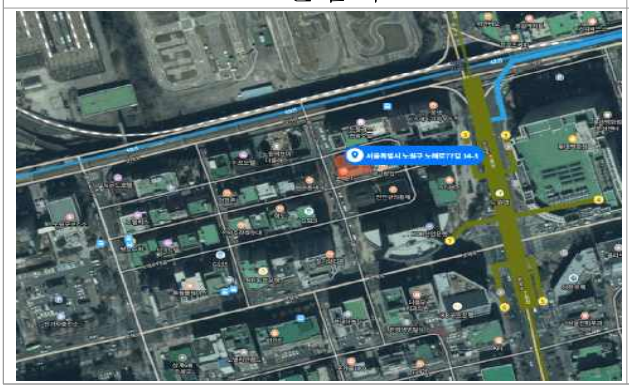 </td><td> </td></tr>
</table>

7) 수탁기관 선정방식 : 공개모집(재위탁)

8) 소요예산 : 금620,037천원(2023년 예산)

- 인건비 415,838천원, 운영비 74,023천원, 사업비 130,176천원

9) 심의결과 : 적정(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6.1.7.시행)〕

제9조(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이하 '민간위탁 조례')[1] 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이하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2 민간위탁 대상여부 검토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사무내용

---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 센터 중 각 센터의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돌봄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② 돌봄종사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돌봄종사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돌봄종사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3]에서 '센터를 자치구,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사무 내용이 ① 시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가 아니고, ② 부분적으로 공신력이 요구되나 위탁 운영에 큰 문제는 없고, ③ 집행부의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사무에 해당하지만 시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하겠음.

○ 「민간위탁 조례」 제4조[4] 및 제6조[5] 등에서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양질의 장기요양요원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위탁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2017년 개소 이래 민간위탁을 통해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가 공개모집을 통한 신규 위탁한 이후 재계약을 통해 현재까지 운영해 왔음.

---

3)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5)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8. <생략>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표2〉 동북어르신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경과

구분	수탁기간	수탁자	수탁자 선정방법	비고
1차	'17.07.01.~'20.06.30.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신규 위탁	공개모집
2차	'20.07.01.~'23.09.30. (12.31.까지 위탁연장 추진)	(사)서울동북여성민우회	재계약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검토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안전한 돌봄 환경조성과 역량강화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2년의 경우 18,069명을 대상으로 총 7,154회 사업을 실시하였음.

〈표3〉 2022년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추진실적

○ 주요 운영 실적 : 온오프라인 강의, 토론회, 상담 실시 등

(단위:회/명)

항목	합계		종합지원센터		서남지원센터		동북지원센터		동남지원센터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회	명
총계	28,081	81,371	11,614	34,080	4,198	13,010	7,154	18,069	5,116	18,024
교육권사업	946	17,514	410	9,043	143	1,574	113	3,114	280	3,783
건강권사업	2,428	15,191	1,038	5,749	331	1,564	558	4,309	501	3,569
노동권사업	2,210	5,788	1,553	3,334	169	530	188	1,247	300	677
정책지원플랫폼	222	4,858	91	2,825	28	418	49	767	54	848
좋은돌봄	126	9,353	11	1,153	34	2,317	31	1,796	50	4,087
기능강화사업	7,638	14,156	2,254	5,719	827	2,130	2,422	3,043	2,135	3,264
일반(문의)상담	14,511	14,511	6,257	6,257	2,665	2,665	3,793	3,793	1,796	1,796

○ 또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어르신 돌봄현장에서 필요한 치매관리,인지활동 및 인문학 교육 등 교육원사업이 타 쉼터에 비해 다소 저조한바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판단됨.

〈표4〉 연도별 쉼터 방문인원

(연인원, 명)

센터명	쉼터명	합계	'20년	'21년	'22년	'23.1분기
합 계		44,780	12,983	18,124	11,122	2,551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인사동	2,261	738	632	722	169
	마포	5,733	2,928	817	1,777	211
서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화곡	4,384	1,632	1,606	858	288
	사당	4,167	1,504	1,235	1,086	342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노원	11,166	2,054	6,019	2,494	599
	회기	9,794	1,862	5,243	2,437	252
동남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능동	5,225	1,722	1,975	1,107	421
	역삼	2,050	543	597	641	269

○ '23년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종합 성과 평가 결과 총점 75.91점으로 나타남.

- 공통지표 우수 평가 결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과의 지속적 거래와 물품구매 사회적 가치 제고 관련 실적 등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개선요청 사항으로는 민간위탁금 분기별 집행실적을 최근까지도 특히 4/4분기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분기별로 균등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항은 적극적인 개선이 요구됨. 당해년도 사업별로

설정한 정량 및 정성목표를 병행하여 실적보고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성과 평가 결과 동북센터는 지역협력 네트워크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비대면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물적·인적 인프라를 활용해 노동법교육, 건강 요가, 심리프로그램 등을 진행한 실적이 우수함
- 개선요청사항으로는 동북 지역 어르신돌봄종사자 모집단은 총 2만8천여명으로 추정되나 센터 이용자는 약 12%내외이므로 지속적인 참여자 확대 노력이 요구됨.

○ 서울시가 '22년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비품,소모품 분류과정에서 내용연수 1년 이상인 물품을 비품으로 분류함에 따라 비품관리목록 과다로 관리부실 우려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중장기 인력운영과 정형적인 교육체계에 대해서 개선 및 보완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평가가 있는바, 향후 수탁기관 선정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표5〉 2022년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지도·감독 사항 주요 점검사항

일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 1차 : 2022. 6. 30. 실시 ○ 2차 : 2022. 12. 08. 실시	○비품관리대장에 소모성 물품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음	완료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조

례」에 따라 위탁기간('20.10.01.~'23.09.30.)만료로 민간위탁(재위탁)하는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요양요원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동 센터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 운영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바,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기존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후 민간위탁 시 센터 운영의 향후 계획 수립 시 관련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음.

붙임1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평가결과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공통 사무 평가	1. 사업인프라	**1-1. 조직 및 인력 운영**	5.00	-	3.00
		1-1-1.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2.50	1.60
		1-1-2. 사업운영의 전문성 보유		2.50	1.40
		1-2. 재정구조 및 예산집행 효율성	8.00	-	5.36
		1-2-1. 민간위탁금 관리의 적정성		5.00	3.20
		1-2-2.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3.00	2.16
		1-3. 사회적 가치 기여	6.00	-	3.96
		1-3-1.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3.00	1.74
		1-3-2. 사회적 기업 등 물품구매 노력		1.50	1.17
		1-3-3. 지역민간전문가 활용 노력		1.50	1.05
	2. 사업활동	**2-1. 사업계획 집행수준**	8.00	-	6.26
		2-1-1. 사업계획의 적정성		2.50	1.75
		2-1-2. 시설 및 기자재 활용도		1.00	0.66
		2-1-3.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및 관련규정준수 수준		1.00	0.62
		2-1-4.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1.50	1.23
		2-1-5. 정책준수 노력도		2.00	2.00
		2-2. 사업활성화 개선노력	5.00	-	3.50
		2-2-1. 이해관계자 협조체계 구축		2.50	2.00
		2-2-2.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2.50	1.50
개별 사무 평가	3. 사업성과	**3-1. 좋은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20.25	-	17.43
		3-1-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치매관리 인지 재활교육사업 연 참여인원		6.75	6.75
		3-1-2. 돌봄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련 건강증진 사업 연 참여인원		5.40	5.34
		3-1-3.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4.05	2.67
		3-1-4.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4.05	2.67
		3-2. 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상담사업	9.00	-	7.75
		3-2-1.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사업 연 참여인원		2.70	2.64
		3-2-2. 돌봄노동자의 권리의식 함양을 위한 사업 연 참여인원		2.70	2.70
		3-2-3.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1.80	1.19
		3-2-4.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1.80	1.22
		3-3. 좋은돌봄 주체형성 지원과 인식개선	15.75	-	14.11
		3-3-1. 권역별 자치구별 돌봄현장조직 지원사업 연 참여인원		4.05	4.05
		3-3-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연 참여인원		5.40	5.40

평가영역	평가범주	평가지표		지표배점	세부배점	득점
		3-3-3.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노력도			3.15	2.33
		3-3-4. 사업성과지표에 대한 목표 적절성			3.15	2.33
		3-4. 대외적 우수사례성과창출 수준		3.00	3.00	2.52
	4. 지도점검 이행노력	4-1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률		5.00	3.00	3.00
		4-2 지도점검에 대한 이행 노력도			2.00	1.56
사용자 만족도 평가	5. 만족도 제고노력	5. 시민만족도 평가결과(합계)		15.00	-	13.46
		5-1. 주민 만족도 조사			10.00	9.36
		5-2. 주민 만족도 제고 노력			5.00	4.10
6. 감점사례		1. 임금체불(사전협의된 임금미지급), 세금체납		-2.00	-2.00	0.00
		2.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보험 미지급		-2.00	-2.00	0.00
		3. 협약사항 위반(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 등) ※협약사항 위반은 개별 건별로 2점씩 감점		-2.00	-2.00	-6.00
		4. 위탁사무 지연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취득		-2.00	-2.00	0.00
		5. 위탁사무 내용 이외의 시설, 장비, 예산 사용		-2.00	-2.00	0.00
		6. 수탁기관 필수교육(인권, 청렴, 성희롱·성폭력 교육)미이수		-2.00	-2.00	0.00
		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2.00	-2.00	0.00
		8.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 의무조치 미이행'		-4.00	-4.00	0.00
		9. 감사 지적사항 발견	징계, 문책, 시정	-2.00	-2.00	0.00
			주의(경고, 훈계)	-1.00	-1.00	0.00
			개선요구, 고발·수사요청	-0.50	-0.50	0.00
			권고, 통보, 현지조치	-0.10	-0.10	0.00
합계				100.00	-	75.91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1187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 울 특 별 시 장

1. 제안이유

가.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권익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탁 운영할 수 있는 사무임

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 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9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및 제11조(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 센터의 운영은 돌봄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인식개선, 권익옹호, 기능강화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 따라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요원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위탁 범위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관리·운영 전반

○ 운영사업(센터의 기능)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
- 장기요양요원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라. 위탁 시설 개요

○ 시 설 명 : 동북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쉼터 2개소 포함)

○ 소 재 지

- 동북센터 :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5층(미아동, 남송빌딩)
  · 동북쉼터1 :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77길 14-3, 5층(상계동, 문화빌딩)
  · 동북쉼터2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12, 5층(휘경동, 우산빌딩)
  ※ 쉼터중 1개소는 계약기간중 운영종료 예정

○ 시설규모 : 동북센터(311.22㎡), 동북쉼터1(249.69㎡), 동북쉼터2(229.46㎡)

○ 담당지역 : 동북권 6개구(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마. 위탁기간 : 1년(2024.01.01 ~ 2024.12.31.)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사. 소요예산 : 금620백만원('23년 예산)

아. 심의결과 : 적정('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2016.1.7.시행)〕

제9조(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 근무환경의 질적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별 또는 자치구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심현희 (☎ 2133-7422)